



1991年 3月 25日 (月曜日)

▲ 이방호수수신총회에 참석  
할 예정.

▲ 최상우 남화토 전시회  
사회장은 3월 18일부터  
5박 6일 동안 중국에 열  
무차 출장.

▲ 조남우  
삼부토건 주식회사 대표이사(사장)로  
3월 18일 회장으로 취임  
했다.

▲ 완도군수협 전화번호인  
국번이 종전 2국에서  
국으로 변경됐다.

(연회비)  
▲주식회사동원토질(대  
이사장인섭)

▲ **총재회**씨 (수신총  
어항관리사무소)  
▲ **원강희**씨 (수산청  
어항관리사무소장)  
▲ **이창기**씨 (국립수산  
기술원소 교수부장) 여

- ▲ 박광훈씨(수산청)  
관리관)
- ▲ 기호준씨(수산청)  
조합과)
- ▲ 박기철씨(수산청)  
워

▲ 김갑부씨(수산청 국장)  
▲ 심영씨(수산청 어항 배황감씨(영생전(營生全) 회사 회장)

▲ 서기 덕씨가 모친상을 당했다. 장례는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에서 행해졌다.



을  
公  
共  
공  
시  
豫  
示

10億이상工事 95·3%

공공시설물을 확정·예약했다. 지난 3월 2일 조달청이 예시한 9년도 정부시설공사 집행 계획 내용(건설부 발주 공사 제외)에 따르면 올해 공공공사집행 규모는 총 1천 2백 65건에 4조 3천 억 원으로 이 중 계속 공사 분을 제외한 순

계약설정 2조7천9억원에  
의 96%인 2조5천9백  
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 
집계됐다.  
이번에 예시된 시설공  
사를 규모별로 보면 10억  
원이상공사가 5백92건으로  
4조 1천24억원, 지역별  
체대상인 10억원 미만이  
6백73건에 1천21억원이  
로 금액면에서 10억원이  
상공사가 전체의 95·3%

우로 축하정비 정수장을 정하게 되다. 그러나 금광사인 경우는 행정부가 정수를 감안, 3월간 계약으로 추첨하게 됨다. 또한 조달청은 2개업체 이상 일률적으로 한 지역등의 일률에 1개사만 응찰할 경우 이를 단체합동으로 간주, 유찰시키기로 한 반정쟁, 한도액 1천만 원으로 계약방법을 바꿔 경쟁력을 높히기로 했다.

조달청은 업체의  
방지를 위해 지역업체공  
동도급조전이 아닌 3군  
이하공사의 배정순위를  
무작위첨방식에 의해  
결정기로 했다.  
조달청은 또 다수업체

기업  
인적자본을  
하고도  
개업체만  
운영할  
경우에  
는 이를  
유찰시킨  
후 경  
쟁폭이  
확대되도록  
방법을  
변경기로  
했다.  
지난 3월 4일  
조달청은  
이 같은  
내용의  
시설공사

# 施設工事계약 業務指針 개정

## 談合방지積極도모

조달청은 업체의 딜함  
방지를 위해 지역업체 공  
동도급조전이 아닌 3군  
이하공사의 배정순위를  
무작위주첨방식에 의해  
결정키로 했다.

기업체만 유찰을 하고도 1  
는 이를 유찰시킨 후 경쟁업체  
쟁족이 확대도록 계약  
방법을 변경키로 했다.  
지난 3월 4일 조달청은  
이같은 내용의 시설공정을

계으업주지권을  
월2일 계약요청서 접수  
본부터 이를 소급적용을  
로 했다.

業務  
자료

工事의 隨意契約 運用要領

(會計例規 2200.04-139-3.1990.12.5)

**第2條(執行基準)**施行令 第104條 第1項 第1號의 規定에 의한 隨意契約 執行基準은 다음과 같다.

1. 施行令 第104條 第1項 第1號 “가”목에서 規定하고 있는 瑕疵責任 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今次工事가 前次工事와 그 垂直的基礎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前次施工物의 일부를 解體 또는 變更하여 이에 接合시키는 경우로서 前次工事의 規模가 今次工事規模의 25%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말한다.
2. 施行令 第104條 第1項 第1號 “나”목에서 規定하고 있는 同一現場에 2人 이상의 業者를 投入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今次工事が 施工過程上 다른 公사와 時間的, 空間的으로 25% 이상 重複되는 경우를 말한다.

## 시설공사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관한 세부절차 기준

[회제 2210-1974(1987. 8. 20)]

수의계약집행기준	세부기준(유권해석)
1) 수의계약집행기준 중 전차공사와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“전차공사”的 범위? (요령 제2조제2호)	- 계약목적물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령상 하자 담보책임기간(1~5년)내에서만 하자보수의무가 시공자에게 있으므로, 전차 공사라 함은 하자책임기간이 계류중인 경우임.
2) 전차공사의 규모가 금차공사규모의 25% 이상 을 차지한 경우에 있어서 “규모”的 의미 (요령 제2조제2호)	- 규모는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. 다만, 수량의 비교가 용이하고 간편한 경우에는 발주관서 판단에 따라 수량비교도 가능.
3)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 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 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로서 전차공사의 규모가 금 차공사규모의 25%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25 %요건이 적용되는 경우? (요령 제2조제1호)	-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한 경우에도 전차공사가 금차공사규모의 25% 이상이어야 함.
4)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· 공간적으로 25%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 “시간적· 공간적”的 의미? (요령 제2조제2호)	
- 시간적· 공간적의 양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하는지?	
- 시간적으로 25%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계약행정소요일수(접수일-착공일)의 산정· 적용방법	- 본 요건은 작업상 혼잡을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만 할 것임. 즉, 한가지 요건만으로는 작업상 혼잡이 야기되지 않을 것임.
- 공간적으로 25% 이상 중복되는 경우라 함은? ① 실제건축물 점유면적 이외에 중기· 관급자재 등의 보관장소등 부수적인 면적도 포함되는지?  ② 토목공사 1개공구를 연차별로 분할 발주하는 경우에도 동 요령이 적용되는지?	- 시간적 중복여부는 계약방법(수의· 경쟁등)을 결정하기 전에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시점에서 예정된 착공일(설계서상 공기)을 기준으로 기산· 중복여부를 판단하여야 함.
5) 물품의 제조· 공급자가 직접설치· 조립하는 것이 국가에 유리한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하자책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? (요령 제2조제5호)	- 예산사정상 1개공구를 연차로 분할 발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39조제1호 나목을 적용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면 동요령 적용이 되어야 함. - 예산회계법상 하자보수문제는 시설공사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물품제조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물품의 경우 제조공급자가 직접 설치· 조립하는 것이 국가에 유리한 경우 이외에 하자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이유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음.



